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98
----------	-------

발의연월일 : 2026. 2. 2.

발 의 자 : 강명구 · 안철수 · 임종득
김기현 · 김기웅 · 이달희
서지영 · 김장겸 · 윤영석
구자근 · 한기호 · 김승수
조은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에서 사고 현황 및 피해 대응조치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예방 조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방법 및 기간의 지정
2. 그 밖에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5조제2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제34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 ③ (생 략)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 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 하여 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u>
	<u>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방법 및 기간의 지정</u>
	<u>2. 그 밖에 유출등이 된 정보주 체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8. (생략) <u><신설></u> 19. ~ 27. (생략) ③ ~ ⑤ (생략)	----- -----. 1. ~ 18. (현행과 같음) <u>18의2. 제34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u> 19. ~ 2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